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민 사 부

결 정

사 건 2001카합57 공사방해금지가처분

채 권 자 ○○광업 주식회사

충북 음성군 금왕읍

대표이사 김○○

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김○○

채 무 자 1. 김○○

충북 음성군 맹동면

2. 조○○

충북 음성군 금왕읍

3. 정○○

충북 음성군 금왕읍

4. 박○○

충북 음성군 맹동면

5. 김○○

충북 음성군 맹동면

6. 안○○

충북 음성군 맹동면

7. 유○○

충북 음성군 맹동면

8. 지○○

충북 음성군 맹동면

9. 안○○

충북 음성군 맹동면

10. 오○○

충북 음성군 맹동면

11. 신○○

충북 음성군 맹동면

12. 윤○○

충북 음성군 맹동면

13. 김○○

충북 음성군 맹동면

14. 안○○

충북 음성군 맹동면

15. 신○○

충북 음성군 맹동면

16. 안○○

충북 음성군 맹동면

채무자들 대리인 변호사 김연수

주 문

1. 채무자들은 별지 토지 목록 기재 토지에서 채권자가 시행하는 별지 광업권 목록 기재 광업권에 터잡은 금광개발공사를, 방해 목적으로 출입하거나 점거하는 등 실력으로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2. 채권자의 위임을 받은 집행관은 제1항의 취지를 적당한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3. 신청비용은 채무자들의 부담으로 한다.

피보전권리의 내용

별지 토지 목록 기재 토지 소유권과 점유권에 터잡은 방해배제 및 방해예방청구권과 별지 광업권 목록 기재 광업권에 터잡은 방해배제 및 방해예방청구권

이 유

기록에 따르면, 채권자는 별지 광업권 목록 기재 광업권의 광업권자로서 그 광업권 행사를 위하여 별지 토지 목록 기재 토지들을 소유하고 있거나 신청의 김○○ 또는 신청의 음성군으로부터 임차하여 이를 점유하면서 그 토지에서 광업권에 따른 탐광과 채광공사를 시행하고 있던 사실, 그런데 채권자가 시행하는 탐광 및 채광공사 현자의 인근 주민들인 채무자들이 채권자의 탐광 및 채광공사로 인하여 지하수 고갈 등 공해를 입게 된다고 주장하면서 별지 토지 목록 기재 토지들에 무단히 들어가 채권자의 탐광 및 채광공사를 저지·방해하고 있으며, 채무자들의 이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채권자의 탐광 및 채광공사가 중단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채권자의 이 사건 신청은 채권자의 위 토지와 광업권에 관한 방해배제청구권 또는 방해예방청구권이라는 피보전권리와 그 보전의 필요성에 관한 소명이 있다.

이에 대하여 채무자들은, 채권자 회사가 한 채광공사는, 광물채굴이 지하수 고갈과 지하수 오염이라는 공익을 해할 경우 광업권 설정을 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고, 채광계획이 지하수 고갈과 지하수 오염이라는 주대한 공익에 배치될 때에는 그 인가를 거부할 수 있으며, 채광계획이 자연경관을 훼손하고 수질을 오염시킬 수 있는 우려가 있는 경우 인가를 하지 아니 할 수 있다는 관련 법규를 어긋나는 것으로서 적법한 광업권설정허가처분과 채광계획인가에 따르지 아니한 위법한 공사라고 주장하나, 제출된 소명자료만으로는 채권자 회사가 가지고 있는 광업권이 당연 무효인 설정허가에 따른 것이라거나 당연무효인 채광계획인가처분에 따른 것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이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채무자들은 또한, 채권자 회사의 위 공사에 대하여 채무자들이 벌인 행위는 채무자들의 헌법상 인간의 존엄과 가치권, 행복추구권, 평등권, 자연권, 환경권, 생명권, 생존권적 기본권,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행한 것으로서 민법상의 정당방위, 긴급피난 또는 자력구제

행위에 해당하므로 그 위법성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제출된 소명 자료를 살펴봐도 채무자들의 행위가 위법성이 없는 정당방위, 긴급피난 또는 자력구제에 해당할 만한 필요성·긴급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그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채권자의 이 사건 신청은 모두 이유 있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5. 16.

재판장 판사 고원석

판사 최은배

판사 안덕호